



#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고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융자금의 한도액과 융자기간을 설정하여 동 조례 제13조의2에 의거 이차 보전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'0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이 제출되어 왔으며,
- '05년도말 현재 중소기업육성 적립기금은 8억원이며, 기존의 이자수입 32백만으로 은행의 중소기업자금융자 10억원에 대한 여신 변동금리에 대하여 이차보전금을 3%이하로 지급코자 하므로 우리군내 중소기업의 목적사업을 지원코자 하므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 여부를 심사한 후 본 계획안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 보고합니다.

#### 6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적립금 이자율은 ?
- 답 : 년 4%입니다.
- 문 : 중소기업유치 지원을 위해 8억원은 적다고 생각되고, 추가로 확보할 의향은 ?
- 답 : 중소기업 유치 지원을 위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, 엑스포 이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#### 7. 토 론 : 없음

#### 8. 심사결과

- 2005. 12. 12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